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6 년 04 월 09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허브자산운용 주식회사
(영문명) HUB ASSET MANAGEMENT Co.,Ltd.
(홈페이지) <http://hubasset.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29, 6층 (삼성동, 위즈빌딩)
(전 화) 02-6959-9023

대 표 이 사 : 김 종 석, 차 원 주

담 당 임 원 : (직 책)
(성 명) (전 화)

작 성 자 : (직 책) 경영관리실장
(성 명) 김 종 영 (전 화) 02-6959-9023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2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식처분금지가처분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OOOOO
3. 판결·결정내용	주식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 금지 결정
4. 판결·결정사유	결정
5.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5.08.25
7. 확인일자	2025.09.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가처분 포함) 등의 판결·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 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